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 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서윤기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이 지난 해 대표발의해 기획경제위원회가
심사 의결해 주신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프리랜서는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모호성으로 인해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이들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시행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현재까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취약한 취업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본 개정안은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 지침을 서울시가
개발해 보급·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활동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무분별한 지원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원가능한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시에 등록된 단체로 제한하였습니다.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살피셔서 기획경제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